

등록번호	감사담당관-3662
등록일자	2021.4.16.
결재일자	2021.4.16.
공개구분	비공개(5.6)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협 조			

세외수입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



서대문구
감사담당관

|| 목 차 ||

I. 감사 개요	1
II. 감사대상 현황	2
III. 감사결과	3
1. 총 평	3
2. 지적사항 총괄표	4
3. 분야별 지적사항	5
4. 모범·적극행정 사례	13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17
1. 감사결과 처분 기준	17
2.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	17
3.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8
4. 신분상 조치대상	19
V. 행정사항	20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결과	

세외수입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

I 감사 개요

□ 감사목적

구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시정·개선하여 세외수입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 재정확충에 기여

□ **감사기간** : 2021. 3. 3.(수) ~ 3. 18.(목) (기간 중 12일)

□ **감사대상** : 세외수입 관리부서(35개 부서)

□ **감사범위** : 2018. 1. 1. ~ 감사일 현재까지 세외수입 업무전반

※ 제외분야('20~'21 특정감사대상): 건축 이행강제금, 국·공유재산 관련 세외 수입(임대수입·매각수입·변상금)

□ **감사방법** : 서면, 시스템 및 실지감사 병행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5명

□ 감사중점사항

- 부과관리(부과대상 금액 산정 및 징수 등) 적정여부
- 수납관리(금고불입, 과·오납 환급 등) 적정여부
- 체납관리(독촉, 가산금, 압류, 결손처분 등) 적정여부
- 세외수입금 관리체계 및 부서 간 협조 등

II 감사대상 현황

□ 세외수입 예산현황(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외 수입	평균		2021		2020		2019		2018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50,820	8.93	51,998	7.58	48,585	8.01	53,039	9.72	49,660	10.41
일반회계	44,209	-	45,044	-	41,749	-	46,693	-	43,351	-
특별회계	6,611	-	6,954	-	6,836	-	6,346	-	6,309	-

□ 세외수입 내용(2020년 기준)

장	관	항	목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 사용료 수입 - 수수료수입 - 사업수입 - 징수교부금수입 - 이자수입	30개목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 부담금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기타수입 - 지난해연도수입	17개목

□ 세외수입(일반회계) 징수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구분	부과(A)		징수(B)		결손		체납		징수율 (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계	71,070	83,555	30,806	58,558	2,294	657	37,970	24,339	
	현년도	27,697	58,308	24,129	55,486			3,568	2,821	95.16%
	과년도	43,373	25,247	6,677	3,072	2,294	657	34,402	21,518	12.17%
2019	계	66,739	75,608	30,248	50,112	3,013	1,493	33,478	24,003	
	현년도	28,836	51,150	25,059	47,128	-	-	3,777	4,022	92.14%
	과년도	37,903	24,458	5,189	2,984	3,013	1,493	29,701	19,981	12.20%
2020	계	60,974	72,858	28,982	48,640	918	480	31,074	23,736	
	현년도	27,788	49,486	24,826	46,357			2,962	3,128	93.68%
	과년도	33,186	23,372	4,156	2,283	918	480	28,112	20,608	9.77%

III 감사결과

1. 총평

우리 구 세입예산의 약 9%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은 행정서비스 대가로 징수되는 수수료나 사용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질서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외부불경제에 대한 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탄력적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구의 경우 2014년부터 개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일반회계 현·지난년도 체납징수 업무를 세무2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체납관리와 함께 체납징수 성과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은 부과근거 법령의 종류와 세목이 많고 부과·징수 처리 건수가 방대하며,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외에 다양한 개별 업무시스템을 병행하고 있어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나, 순환 근무 등으로 인해 부과 및 체납 관리의 부실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감사는 특정감사로서 이러한 세외수입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과 및 체납관리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세외수입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감사결과 세외수입 관리 담당 직원 대부분이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었으며, 특히 체납자 재산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징수 추진,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자동차 일괄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체납관리, 체계적이고 통일된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보건소 세외수입 관리·운영 방식 개선 노력 등 효율적인 세외수입 업무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 숙지 미흡, 잘못된 관행 답습, 업무 소홀 등으로 인한 총 22건의 지적사항(시정 13건, 기관경고 9건)이 확인되었으며,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을 살펴보면, 부과관리 분야에서 부서별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부과 누락사항이 여러 건 확인되었고, 체납관리 분야에서는 체납처분의 필수 요건이 되는 독촉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처리 한 건이 다수 확인된 바,

세외수입 관리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 대상이 누락 되지 않도록 담당자 변동 시 인계·인수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업무 숙지를 위해 관련 업무매뉴얼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담부서로 체납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현년도 체납에 대한 적기 독촉 및 송달사항 확보, 신속한 압류조치 등 충실한 체납관리 후 이관하여 이관 후 효율적인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세외수입 전담부서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모니터링 및 업무지도·점검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체납 근절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징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 세외수입 부과·징수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 명, 건, 천원)

합 계			징계	시정 (금액)	기관 경고	개선 요구	권고	통보	현지 조치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22	3	30,580	-	13 (30,580)	9	-	-	-	-

※ 모범·적극행정 사례 : 3건

3. 분야별 지적사항

부과·수납 관리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누락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3개 시설물에 대하여 14,770천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2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등 부과 누락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제44조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84조에 따르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신고분을 부과한 후 해당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수시분 300천원을 부과하지 않거나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2건 60천원 미부과

3 운수사업자 과징금 부과 부적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 노선, 운행계통, 사업구역, 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에 같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 (운수사업자 과징금 부과 누락)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타 기관에 적발되어 통보된 위반사항 3건에 대하여 과징금 1,000천원 미부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2]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때에 운송사업자 등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사업자가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이상 반복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고 되어있음

⇒ (운수사업자 과징금 과소 부과) 1년내 동일행위로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대상에 대하여 명확한 감경사유 없이 정해진 과징금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총 76회 6,500천원을 과소 부과

4 실내공기질관리가 교육대상자 관리 소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3년마다 1회(신규지정 업소의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 실내공기질관리자 법정교육을 받아야 함

⇒ 보수교육 대상기관 10개 기관에 교육 안내 미실시 및 교육대상 통보 후 교육 미이수한 10개 기관에 과태료 미부과

5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재부과 누락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발파진동 규제기준 초과 등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3항제2의2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하여 부과할 있음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7건에 대하여 자진납부 없이 사전통지 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감경 적용한 과태료를 취소하고 적정 과태료를 재부과하지 않음

6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미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2년 마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소유주에게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에 신청기간 경과 통지를,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유주에게는 제86조의7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소유주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5항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7조 및 별표15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인 95건에 대하여 정기검사 독촉 안내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을 미실시하고 과태료 미부과

7 건축법 위반 과태료 재부과 누락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전체 철거하는 경우 건축과에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축물 철거 전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54조1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음

⇒ 건축물 철거 전 신고를 미필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자진 납부 없이 사전통지 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적정 과태료 300천원을 재부과하지 않음

8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흡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긴 경우 같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의견제출을 받게 된 경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서면으로 받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하고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의거 과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함

⇒ (과태료 부과 취소업무 소홀) 2019년 의견제출 된 10건에 대하여 의견제출에 대한 내부결재 없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0. 6. 4.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가 과태료 부과 후 6개월 내에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금연교육은 50%, 금연지원 서비스는 전액 과태료가 감면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6개월의 과태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한 내 이수할 경우 담당자는 과태료를 50%감경 부과하거나 감면 처리해야 함

또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상자는 이수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 이수를 포기했을 경우 20% 감경 적용하여 부과한 과태료 8만원은 취소하고 10만원으로 재부과 하여야 함

⇒ (과태료 유예대상자 관리 업무 소홀)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으로 인한 유예대상자 329명 중 교육이수 한 312명에 대한 취소처리 및 이수 포기 한 17명에 대한 과태료 재부과 미실시

9 쇠고기 이력번호 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누락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판매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7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음

⇒ 축산물 위생점검에 따른 쇠고기 DNA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통보된 3건에 대하여 과태료 2,100천원 부과 누락

10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부적정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르면 담배꽂초, 휴기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견제출 또는 자진납부 없이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경 부과한 과태료를 부과취소하고 적정 과태료 750천원을 재부과하여야 함에도 미부과

11 증지수입 수납금 관리 부적정

「지방회계법」 제22조에 따르면 출납공무원은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납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로부터 5일이 되는 날에 하여야 함

⇒ 현금으로 직접 수납한 증명서 발급수수료 수납금을 익일까지 구 금고에 세입조치 하지 않고 최소 1일에서 최대 35일 이상 지연하여 납입

체납관리

12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대상자 등에 대한 독촉 지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납무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있음

⇒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미납자 21명에 대한 독촉고지를 최소 7일에서 최대 55일 지연 처리

13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독촉 지연

「식품위생법」 제8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1회 독촉 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하며, 과징금 미납에 따른 독촉장은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1개소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독촉고지를 51일 지연 처리

14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독촉 지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납무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함

⇒ 동물보호법위반 과태료 체납 2건에 대해 독촉장을 고지하면서 각각 157일, 167일 지연하여 처리

15 도로사용료 납부 대상자 등에 대한 과태료 독촉 지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납무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있음

⇒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 가로판매대사용료, 도로법위반 과태료 미납자 30명에 대한 독촉고지를 최소 15일에서 최대 212일 지연처리

16 게임산업법 위반 과징금 및 관광진흥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 지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36조(과징금 부과)에 따라 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함

또한, 『관광진흥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함

⇒ 게임산업법 위반 과징금 및 관광진흥법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를 각각 61일, 92일 지연하여 처리

17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독촉 지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납무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있음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실시하면서 최소 79일에서 최대 109일 지연하여 처리

18 과태료 체납 시 독촉장 미발송 및 독촉 지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납무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있음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납자 50명에 대해 독촉을 미실시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하수도법위반 과태료 미납자 150명에 대하여 독촉을 실시하면서 최소 7일에서 최대 692일 지연 처리

19 체납 소송비용액 회수절차 소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금에 대하여 회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소송비용 청구를 받고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 독촉에도 소송비용액이 미납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61조 및 제70조에 의거 재산관계 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함

⇒ 확정결정된 소송비용액 2건 15,973천원이 납부기한 내 미납되었음에도 독촉 고지를 실시하지 않는 등 회수절차 소홀

20 소송비용액 체납자에 대한 회수절차 소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금에 대하여 회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소송비용 청구를 받고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 독촉에도 소송비용액이 미납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61조 및 제70조에 의거 재산관계 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함

⇒ 체납된 소송비용액 3,110천원에 대하여 독촉고지 미실시

21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소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외수입업무편람」에 따르면, 압류가 지연될 경우 소유권이전 등으로 채권 일실 우려가 있으므로 독촉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신속하게 압류조치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 재산을 소유한 세외수입 체납자 3명(체납액 829천원)에 대해 신속하게 압류 조치를 하지 않아 채권을 일실하였고, 체납자 3명(체납액 2,684천원)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에 압류를 실시하는 등 채권확보에 소홀

22 소송비용 시효결손 처리 부적정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내지 제84조에 따르면, 소멸시효 기산일(통상 독촉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단, 법제처 법령 해석 07-306(2007.10.1.)에 의하면, 소송비용회수금 등 국가의 금권채권이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지방세외수입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소송비용액 910천원에 대해 결손처리

4. 모범사례 · 적극행정 사례

1 조세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위한 맞춤형 체납 징수 추진

□ 추진개요

-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라 납부의식 결여로 고질체납자의 점진적 증가에 따른 특단의 대책 필요성 요구
 -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납부 방법 설정
 - 끝까지 추적하여 소실 채권 해소 및 체납의 굴레에서 탈피

□ 추진내용

- 서대문구 □□동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체납독려를 통한 맞춤형 납부 유도
 - 당초 체납현황 : 6건 66,850천원
 - 완납 일자 : 2020. 9월
- 체납처분 등 업무 처리 과정
 - 체납 : 6건 66,850,000원
 - ▷1차 압류(2012.6.5.) ▷2차 압류(2013.6.10.)
 - ▷3차 압류(2016.2.3.) ▷4차 압류(2016.2.16.)
 - ▷5차 압류(2016.3.9.) ▷3차 압류 낙찰(2016.6.22.)
 - ▷6차 압류(2015.12.23.) ▷7차 압류(2019.5.17.)
 - 납부 독려 : 지속적인 방문으로 신뢰 구축
 - ▷1차 현장방문 : '18.3월 경 ▷2차 현장방문 : ' 19.4월 경
 - ▷3차 현장방문 : '19.7월 경 ▷4차 현장방문 : ' 19.9월 경
 - ▷5차 현장방문 : '20.4월 경 ▷6차 현장방문 : ' 20.8월 경

□ 추진성과

- 독촉 이후 적기 체납처분으로 일실 채권 방지
- 체납자와의 신뢰관계 형성 및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 동시 활용
- 공매처분 보다 효율적인 매각처분을 통해 매각대금 납부 유도 및 완납 처리

▶ 수범공무원 : 세무7급 김혜련, 임기제마급 진은주

□ 적극행정 유형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현황 및 문제점

- 실익 없는 압류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업무 효율성 떨어짐
- 실익 없는 압류 자동차 2,831대
 - 체납현황 : 2,494명/ 2,831대/ 1,356백만원

구분	내용 연수				
	15년 이전	16~18년	19~21년	22~24년	25년 이상
대수	1,987	328	424	80	12

□ 추진내용

- 자동차 체납처분 중지대상 전수 조사 및 발취
 - (1차) 전체 압류 차량의 차량현황(연식,검사연도,운행여부 등) 조사 : 8~9월
 - (2차) 말소차량 및 멸실 확정차량 선 압류해제 : 9월
 - (3차) 사실상 멸실 인정 차량 체납처분 중지대상 조사 : 9월~10월
- ※ 최근 4년 내 책임보험 가입차량, 번호판 영치차량 등 최종 제외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 2020. 10. 26.(월) 15:00
 - 안건 : 자동차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 내용 : 내용연수 15년 초과 차량의 압류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
 - 「체납처분의 집행의 중지」 의결

대상	납세자명	압류자동차	세외수입 체납총액	비고
2831	○○○○○○○ 외 2494 명	01도**86(엘란트라, 94년식)외 2,830대	1,356백만원	원안 의결

- 압류자동차 체납처분 중지 공고(서대문구 공고 제2020-1190호)

○ 체납처분 중지 차량 압류해제

- 체납처분 중지대상 : 2,831대
- 해제일 : 2020.12.4
- 해제방법 : 세외수입종합시스템 일괄 압류해제,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건별 압류해제

○ 관련규정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 추진성과(효과)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체납처분 중지로 압류를 해제하여 징수권 소멸시효 진행
- 압류해제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 유도 체납자 회생의지 제고

○ 실효성 있는 조세행정 구현

- 실익 없는 압류를 정리하여 체납업무의 효율성 향상
- 대체압류 등 징수 실적 거양 : 17,519천원 징수

3 보건소 세외수입 관리·운영 개선

□ 적극행정 유형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소·지소·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증지수입 등에 대한 처리절차 상이
- 의료사업 수입의 사업부서와 수납부서 이원화

□ 추진내용

- 세외수입(증지수입 및 의료사업 수입) 결제·보고방식 개선
- 체증명 발급 현금수입 처리방식 개선
- 의료사업 수입 세입추계 및 결산 일원화

□ 추진성과(효과)

- 증지수입 및 의료사업에 대한 보건소·지소·분소별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처리방식 도입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세외수입 처리
- 3개 부서별 추진하는 의료사업에 대한 보건소 전체의 세외수입 현황을 일목요연한 체계구축으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 업무 수행

▶수범공무원 : 행정6급 안정화, 행정9급 최은정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1. 감사결과 처분 기준

□ 처분기준

- 징 계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제감시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 시 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 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통 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주의요구·개선요구·권고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지조치 :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 공무원 신분상 조치

- 훈 계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 주 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2.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

- 개최일시 : 2021. 4. 2.(금) 10:00 ~ 11:00
- 심의위원 : 5명(감사담당관, 감사팀장, 기술감사팀장, 조사팀장, 민원조사팀장)
- 심의내용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신분상 조치 양정 심의
- 심의결과 : 별첨

3.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원, 명)

연번	부서	제 목	심의결과		
			처분 종류 ¹⁾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총 22 건 (시정 13, 기관경고 9)				30,580,270	3명 (주의3)
1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누락	시정	14,770,270 (추징)	1명 (주의)
2	교통행정과	건설기계법 위반 과태료 등 부과 누락	시정	360,000 (추징)	
3	교통행정과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대상자 등에 대한 독촉 지연	기관경고		
4	교통관리과	운수사업자 과징금 부과 부적정	시정	1,000,000 (추징)	1명 (주의)
5	도시재정비과	체납 소송비용액 회수절차 소홀	시정		
6	도시재정비과	소송비용 시효결손 처리 부적정	시정		
7	세무1과	증지수입 수납금 관리 부적정	기관경고		
8	세무2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소홀	기관경고		
9	기후환경과	실내공기질관리자 교육대상자 관리 소홀	시정	5,000,000 (추징)	
10	기후환경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재부과 누락	시정	4,600,000 (추징)	
11	기후환경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미부과	시정		1명 (주의)
12	주택과	소송비용액 체납자에 대한 회수절차 소홀	시정		
13	건축과	건축법 위반 과태료 재부과 누락	시정	300,000 (추징)	
14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독촉 지연	기관경고		
15	지역건강과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시정	1,700,000 (추징)	

1) 처분종류

- 시 정 :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환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 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위 : 건, 원, 명)

연번	부서	제 목	심의결과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16	일자리경제과	쇠고기 이력번호 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누락	시정	2,100,000 (추징)	
17	일자리경제과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지연	기관경고		
18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납부대상자 등에 대한 독촉고지 지연	기관경고		
19	문화체육과	게임산업법 위반 과징금 및 관광진흥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독촉지연	기관경고		
20	자치행정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독촉고지 지연	기관경고		
21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부적정	시정	750,000 (추징)	
22	청소행정과	과태료 체납시 독촉장 미발송 및 독촉고지 지연	기관경고		

4. 신분상 조치대상

소 속		직급	성명	지적사항	조치 양정
행위시	현재				

- 별 도 통 보 -

V 행정 사항

□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 조치방법 : 붙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의 건별 ‘조치할 사항’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

- 시정·기관경고 : 2개월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

- 개선요구·권고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제출

※ 2개월을 초과하는 사항은 2개월 이내 추진 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제출하고 추후 집행계획에 따라 최종 결과 제출

○ 조치결과 제출 기한 : 2021. 6. 4.(금)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2.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